##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2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송석준

강승규・서천호・김소희

정동만 · 성일종 · 이종욱

김용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 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법률 제 호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 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보상을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      | 제38조(손실보상) ①                    |
|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 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                                 |
|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                                 |
|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         |                                 |
| 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         |                                 |
| 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                                 |
|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u>한다</u> . | <u>ह</u> ेम,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                |
|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          | 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
|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 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여야 한                |
| <u>수 있다.</u>             | <u>다</u> . <u>&lt;단서 삭제&gt;</u> |
|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 <u>&lt;삭 제&gt;</u>              |
| 를 하지 아니한 자               |                                 |
|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 <u>&lt;삭 제&gt;</u>              |
|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                                 |
| 하거나 기피한 자                |                                 |
|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 <u>&lt;</u> 삭 제>                |
|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          |                                 |
| 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         |                                 |
| <u>니한 자</u>              |                                 |

-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 <삭 제>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 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 을 위반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 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 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 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 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 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 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 니한 자
-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기준과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u>4</u>       |
| <u>제3항</u>     |
|                |
|                |
|                |
|                |
| <u>.</u>       |